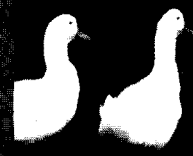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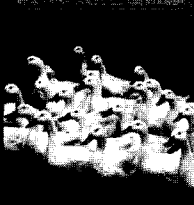




[축산법령] '종오리업' 도*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

※「축산법 시행령」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



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'종오리업'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,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'양계업'과 '오리사육업'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㎡이상에서 50㎡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축산법시행령」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·공포되었다고 밝혔다. 축산업 등록대상 : ①부화업 ②계란집하업 ③종축업(종돈업, 종계업, "종오리업")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, 양계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,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·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,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·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「축산법 시행령」의 주요 개정(안)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'종오리업'을 축산업등록 대상으로 신설

- '종오리업의 등록기준'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, '종오리업'의 등록으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.

- 급변 '종오리업'의 축산업 등록대상으로 포함은 오리업계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것을 수용하였다.

-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.

2 '양계업과 오리사육업'의 등록대상 변경

- 현재 축산업등록 대상을 '사육시설 면적 300㎡초과'에서 '사육시설면적 50㎡초과'로 변경하되, 공

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, AI 상시방역 체계 운영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.

-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.

3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 확대

- 농업인들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을 농협·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였다.

4 '가축개량기관지정의 시설기준'을 완화

- 현재 가축개량기관 지정의 시설·장비기준은 '30㎡ 이상의 사무실'이 필요하나, '24㎡ 이상의 사무실'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.

◎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

1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요건 완화 등(안 제13조)

【현행】: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

【개정】: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

■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

-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할 때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의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정이 용이하게 됨.

2 축산업의 등록대상 확대 등(안 제3조, 제4조)

■ 가축개량기관 지정요건(안 제13조)

【현행】: 가축사육시설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·오리사육업

【개정】: 가축사육시설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·오리사육업

■ 축산업 중 종오리업 등록기준 신설(안 제4조)

【신설】

-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춘 것
- 2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
- 3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 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·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

■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

-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, 그 사전 예방을 위하여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경우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㎡ 초과에서 50㎡ 초과로 확대되고, 축산업의 등록기준 중 “종축업”에 “종오리업”을 추가하면서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종오리업에 대한 시설·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.
- 이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기대됨.

3 축산발전기금의 용자 취급기관 확대(안 제20조)

【현행】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

【개정】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■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

- 농어업인들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농촌지점망을 갖춘 금융기관도 축발기금의 용자취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.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과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,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함.
-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용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.

4 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정비(안 제27조)

【현행】:

- 1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【별표 3】과 같다.
-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【개정】 : 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**【별표 3】**과 같다.

■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제정·시행(법률 제8725호, 2007. 12. 22공포, 2008.6.22시행)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등을 정비함.

대통령령 제 21180호

◎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30제곱미터”를 “24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3조제3호 및 제4호 중 “300제곱미터”를 각각 “50제곱미터”로 한다.
- 제15조의 제목 “(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”을 “(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·장비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(1) 부화업: 부화장
 - (2) 계란집하업: 계란집하장
 - (3) 종축업 ㉠ 종돈업: 종돈사육시설
 - ㉡ 종계업: 종계사육시설
 - ㉢ 종오리업: 종오리사육시설
 - (4) 가축사육업: 가축사육시설
- 제17조 중 “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”를 “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20조제1항 본문 중 “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”을 “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

다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농수산물 유통공사법”을 “농수산물유통공사법”으로 한다.

- 제21조제2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- 제24조제2호 중 “「증권거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”을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”으로 한다.
- 제26조제2항 중 “법 제30조제1항”을 “법 제32조제1항”으로 한다.
-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**【별표 3】**과 같다.
- **【별표 1】** 종축업의 종계업란 다음에 종오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
 - ②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. 다만,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·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
- **【별표 2】**를 별지와 같이 한다.
- **【별표 3】**의 제목 중 “제27조제3항”을 “제27조”로 하고,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본문 중 “참작”을 “고려”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3호·제4호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,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